

의안번호	2213656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계번호	25F564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)	○ 내국기업이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등의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판매가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다음의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 ※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철강 관련 재화,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으로 인정된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제품 － 공제대상 재화의 요건: ①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② 생산에 사용된 부품·소재·장비 중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·소재·장비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재화 － 공제내용: 해당 재화의 판매 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공제 －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20% － 적용기한: 2035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 (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5 신설)
 - 개정안은 내국기업이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공제요건에 맞게 생산한 경우, 판매수량에 비례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공제대상: 다음의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
 - ※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철강 관련 재화, 국가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으로 인정된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제품
 - 공제대상 재화의 요건:
 - ①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
 - ② 생산에 사용된 부품·소재·장비 중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·소재·장비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재화
 - 공제내용: 해당 재화의 판매 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공제
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20%
 - 적용기한: 2035.12.31.
 - 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 허용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등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법인세액 및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제품의 품목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등 공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, 판매수량 1단 위당 공제액, 판매수량 산정 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 재화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철강 관련 재화,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재화 등이 있으나, 세부적으로 특정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 - 또한, 공제대상인 제품의 판매량이나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·소재·장비의

비중 등 공제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
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